

의안번호	2218460
의 퇴 인	박정하의원
회 답 일	2026. 4. 28.
추계번호	26C2285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61조(일반 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)	국가유산청장은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현상, 관리, 그 밖의 보존상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하고,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조사하게 할 수 있음 ※현행: 국가유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하게 할 수 있음	의무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61조(일반 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□ 일반동산문화유산에 대한 정기조사 실시 의무 부과(안 제61조)

- 개정안에 따라 일반동산문화유산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는 경우, 그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일반동산문화유산¹⁾에 대한 정기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 비지정 동산문화유산에 대한 현황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나,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비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사범위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 정립되어

1) 법 제60조제1항에 따르면,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이 법에 따라 지정 또는 「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뜻함

있지 않아, 현시점에서 정기조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

- 참고로, 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에 대하여는 법 제44조에 정기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,²⁾ 정기조사 운영 지침에서 3년 또는 5년마다 실시하도록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음³⁾

□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수반요인의 주요 사항을 현 단계에서 파악하기 어려워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에 해당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2) 법 제44조(정기조사)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, 관리, 그 밖의 보존상황 등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.(이하 생략)

3) 「국가지정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정기조사 운영 지침」 제3조(조사주기 및 대상) ① 국가지정유산 등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. 단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5년마다 실시한다.

1. 동산에 속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등(국보, 보물, 국가민속문화유산, 국가등록문화유산)

2. 건물 안에 있는 건축물류 국가지정유산 등(국보, 보물, 국가등록문화유산)

3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 등

4.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

5.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국가지정유산 등

6. 정기조사 결과 양호한 상태로 분류된 국가지정유산 등

③ 모니터링·정밀조사·안전진단·보수정비가 진행 중인 국가지정유산 및 비공개 국가지정유산 등은 동 조사 등이 완료된 이후 제1항이 정하는 조사주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.

④ 재조사 등은 정기조사 후 보다 깊이 있는 조사가 필요하거나 국가지정유산 등의 보존·관리 및 활용에 뚜렷한 변화가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주기 도래 전에 실시할 수 있으며, 재조사 등을 실시한 국가지정유산 등의 다음 정기조사는 제1항이 정하는 조사주기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.

⑤ 정기조사 실시부서는 국가유산 유형별·연도별로 3년 또는 5년 주기 정기조사 및 재조사 등의 국가유산 목록을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한다.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(과장 직무대리)
사회비용추계과	이제정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제정	02-6788-3739	jejeong2@assembly.go.kr